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57 발의연월일: 2025. 4. 18.

발 의 자:임미애·권향엽·김문수

김병주・김 윤・노종면

문금주 • 박정현 • 박지원

박해철 · 송옥주 · 송재봉

신정훈 · 안도걸 · 양부남

어기구 • 염태영 • 오세희

위성곤 • 윤건영 • 윤준병

이광희 • 이병진 • 이용우

이워택 • 이재강 • 임호선

전종덕 • 전진숙 • 정동영

조계원 • 주철현 • 최민희

한병도 · 허성무 · 허 영

의원(36인)

제안이유

최근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초대형 산불은 기후위기가 초래한 재난의 실체를 뚜렷이 드러내어 지 역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함을 여실히 보여줌.

사상자 83명, 산불영향구역 48,106ha, 주택소실 4,760여 동과 35건의

국가유산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산기반 파괴 등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함. 삶과 생업의 터전과 기반이 모조리 파괴됨으로써 경영활동의 재개를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

문제는 기후위기로 인한 초대형산불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3월 21일 발생한 산불피해를 수습도 하기 전에 경상남도 하동 및 경상북도 경 주 등 산불이 이어지고 있음.

산불피해가 주거지 및 생산시설로 확산되면 그 재난의 특성상 회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 파괴가 수반됨. 따라서 초대형산불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주민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어 삶의 회복과 일상의 복귀는 요원할 것임. 또한 지역 전체가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어 마을공동체는 해체되고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인한 경영손실과 경영자금 채무 상환 문제가 발생하여 재기가 힘들어짐으로써 지역경제에 악영 향을 미치고 지역 일자리 감소 규모가 커질 것임.

이에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지역사회 존속과 회복, 피해주민의 회복과 피해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률안을 마련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김해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통해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대형산불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3조).
-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초대형산불의 판정과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등 보상 관련 전반을 심의·의결함.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피해자 대표로 구성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지급신청자는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함 (안 제9조).
- 마.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통지받은 지급신청자는 위원회에 보 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급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함(안 제11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고 우선

적으로 시행하며, 생계·주거·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일상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지원을 해야 함(안 제18조).

- 사. 국가등은 피해자가 필요한 생계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도록 함(안제21조).
- 아. 국가등은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원 단가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국고 부담비율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안 제22조).

법률 제 호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 ・안동시・영덕군・영양군・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김해 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신체적・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통하여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초대형산불"이란 2025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 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 김해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 산불로서 그 피해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거 나 강풍 등으로 산불이 주거지 및 도심지를 위협하여 인명피해, 주택 및 생산・영업 시설 소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가 발 생한 산불로서 제5조에 따른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가 심의하여 초대형산불로 판정한 산불을 말한다.
 - 2. "피해자"란 초대형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서 산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3. "피해지역"이란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초대형산불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초대형산불 피해보상과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피해자 보상

- 제5조(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 ① 국가가 초대형산불 판정 및 피해자 보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 소속으로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 2.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3. 피해지역 주민대표 및 이재민 단체 대표
- 4. 산불·재난·복구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6. 그 밖에 국무총리가 피해보상 및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 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초대형산불 파정에 관한 사항
 - 2.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3. 보상금 지급결정 기준 및 보상금액 산정 근거에 관한 사항
 - 4. 보상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
 -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사실조사) ①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사실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피해자 단체) ① 피해자는 단체를 구성하여 피해지역에 소속된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보상금 지급 신청 등) ① 국가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 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없는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지급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신청서 흠 결의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국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의 지급결정 기준 및 금액 산정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결정, 금액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결정서의 통지)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급신청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10조(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지받은 지급신청자가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 청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보상금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금(제1호의 경우에는 보상금의 2 배를 말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상금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다른 보상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재심사 신청)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지급신청자는 제10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재심사 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

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지급신청자에게 알려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4조에 따른 신청 흠결의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신청의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임시지급 및 정산)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신청자의 서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지급신청자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결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 ③ 지급신청자는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보상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및 「민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받은 날부터 보상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까지의 이자는 제외한다.
- 제17조(소멸시효)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이 지급신청자에게 통지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3장 피해자 신속 지원 등

- 제18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보상 및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야 한다.
 - ②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계·주거·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20조(생계지원금 등) ①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이하 "생계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1. 생계지원금: 피해자의 생계 보조에 필요한 비용
 - 2. 주거지원금: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보조하는 비용
 - 3.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초대형산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 되는 비용
 - ② 생계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피해자 금융지원)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자가 필요한 생계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다.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 제22조(피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등은 초대 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 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 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 2. 주거용 건축물(초대형산불 발생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복구비 지원
 -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6.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금 및 시설복구비 등의 지원
- 7.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 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 지원
- 8. 생산·영업시설 및 장비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장비의 복구를 위한 지원
- 9.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 1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중 유형문화유산의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 11. 임시주거시설 지원
- 12. 공동주택단지 조성 및 지원
- 13. 산불로 인해 주기능을 상실한 건물의 철거비 지원
- 14. 대형산불로 인해 발생한 생활폐기물, 건물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복구 비용 지원
- 15. 산불진화 등 공무수행사망자 지원
- 16. 심리상담 등의 지원과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

료

- 17.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 18.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및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원 단가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국고 부담비율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 원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제23조(복구비 등의 선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23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미리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 무서장
- 2. 국민연금 가입·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 3. 국민건강보험 가입·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3 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 ④ 제1항에 따른 복구비등의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정할 수 있다.
- 제25조(「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 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③ 이 법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및 벌칙

- 제27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28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및 생계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등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의 설립은 이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